

수원지방법원 2024. 10. 30 선고 2024가단53517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0. 16.

판 결 선 고 2024. 10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0,712,036원 및 이 중 28,006,839원에 대하여 2024. 10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가 소외 D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와 사이에 2019. 5. 15.경 (차량번호 1 생략) G90 차량(이하 '이 사건 차량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, 취득원가 87,393,912원, 월 납입금 1,581,800원, 연체이율 연 24%로 정하여 리스계약(이하 '이 사건 리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, 소외 회사의 2024. 9. 30.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리스료가 28,006,839원에 이르고 그에 관한 연체료가 2,705,19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금액 30,712,036원(= 연체리스료 28,006,839원 + 연체료 2,705,197원) 및 이에 대하여 위 28,006,839원에 관하여 2024. 10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 연 24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인한